

제239회 영등포구의회  
2022년도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 
일부개정규칙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우경란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2. 9. 28.

運 營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 
일부개정규칙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9호로 2022년 9월 18일 우경란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위원의 겸임을 허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겸임 허용(안 제72조의 2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입법예고 : 생략.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일부개정규칙안은

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위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### 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**안 제72조의 2**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에 따른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위원장·위원과 겸직을 허용하고,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를 행동강령 조례에 준하도록 개정함.

### ○ 검토결과

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중복될 수 있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적·시간적 소요와 예산 등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

## 지방자치법

**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**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

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  
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 
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 
존중하여야 한다.